
고용노동부·중앙노동위원회 공동워크숍('26.3.4.)

위원장님 말씀참고자료

□ 개정 노동조합법은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는 원청 사용자와 이에 대해 교섭하고자 하는 하청 노동조합 간 대화를 촉진하고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임

*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권은 절차적 권리로서,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가 단체교섭을 통해 노사가 합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근로조건에 대한 그 실질적 권리가 구현됨

□ 오늘 설명드리는 원·하청 교섭절차 매뉴얼은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 실질 교섭 촉진을 위해,

- 하청 노동조합에게 실효적인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한편,
- 원청 사용자도 효율적으로 하청 노동조합과 교섭에 임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마련한 것임

□ 기존 원청 교섭단위와 하청 교섭단위는 종래와 같이 운영하되,

- 원·하청 교섭에 있어 그 교섭단위는 '원청 사용자'와 '전체 하청 노동조합(원)'으로 해석·적용하고,
- 전체 하청 노동조합 간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 선정되는 하청 근로자 전체를 대표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원청 사용자와 교섭토록 하는 것임

- 이는 하청노동조합은 원청에 대한 전체 하청노동자의 단결권을 바탕으로 한 교섭력을 확보하면서,
 - 원·하청이 하나의 교섭단위로 묶이는 데에서 오는 충돌을 방지하는 합리적인 방안임
 - 만약 원·하청이 공동으로 원청과 교섭하고자 한다면, 이는 당사자 간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능할 것임
- 과거 우리 노동현장은 원청이 교섭의무가 없다고 회피하고 하청노동조합은 교섭력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불법 투쟁이나 거리 투쟁으로 나온 역사가 있었음
 - 그러나, 이제는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따라 원청사용자와 하청노동조합은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해야 할 것임
-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원·하청 간 합법적인 교섭의 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,
 - 향후 노동위원회는 원·하청 관계에서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 등 복수노조 사건, 단체교섭 거부·해태 부당노동 행위 사건 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,
 - 원·하청 노사의 자율적 교섭 지원을 위한 적극적 조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·하청 상생의 노사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